

#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職域)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옥정석\*

단국대학교

## 초록

운동학 학술지, 2013, 15(2): 139-146.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職域)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서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체육지도자 관련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체육지도자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들이 일터를 확대 명시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의로 고용을 의무화하던지 최소한 고용을 권장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체육지도자 자격구조가 복잡하고 유형이 과도하게 세분되어 있다. 자격명칭은 하나로 통일하더라도 전문분야 및 등급을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종합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장업, 공공기관·산업체·지역사회운동시설,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의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스포츠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을 위하여 개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활동 영역은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운동관리사의 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한다면 1급에서는 스포츠전문 및 임상전문 등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검정 후 연수가 진행될 것이므로 대학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사후 연수제도마저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국가는 검정기능만 가지고 대학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하는 것이 전문성을 드높이고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자격제도는 전공자들의 취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 의료비절감, 국민건강보험 재정개선 등의 선순환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역할을 인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운동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성공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정립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직역

## 서론

학교체육에서 사회체육, 생활체육, 보건체육 등으로 체육의 영역이나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의 직역은 그 테두리의 기대치만 확장되었을 뿐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실속이 없다. 특히 초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김기진, 2009; 제세영, 2010; Blair et al., 1989; Blair et al., 1995; Prochaska & Velicer, 1997), 의료비절감(고광욱, 2006; 김정원, 2007; 박일혁, 2009; ACSM, 2013), 국민건강보험재정개선 등의 사안에서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고광욱, 2006; Blair et al., 1995) 그 주역을 담당할 운동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합의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정덕조와 옥정석, 2007).

체육학계 내부에서 마저 체육지도자가 다루는 업무 내용의 최상위 개념이 "운동" 인가 "스포츠" 인가를 놓고 지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제11309호, 2012.2.17, 일부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2011.12.30), 이에 따라 체육지도자 관련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d).

\* 교신저자: jsok@dankook.ac.kr

체육지도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2013b; 2013c; 2013d).

이에 따라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명칭이 없어지고 스포츠지도사로 통합되고, 추가취득의 형태로 장애인·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되고, “1급 생활체육지도사”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대체될 예정이다.

체육지도자 양성과정은, 과거에 연수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자격검정시험을 보게 하던 것을 개정된 법에서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2013b; 2013c).

그리고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2013b; 2013c).

더욱이 아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체육지도자의 일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며 개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구조와 유형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1급 생활체육지도사”와 연계될 것으로 보이는 건강운동사가 향후 보건·의료 분야 운동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최대의 쟁점이 된 가운데 활동영역, 업무범위, 자격등급 및 세부전공분야, 자격검정시험 및 직무연수, 경과조치 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신윤아, 2005; 옥정석, 2009a; 이윤태, 2010; 전병률, 2006; 최종명, 2010).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미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하는 조항들 중에서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 확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전문가자문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문제점

### 체육지도자의 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문화체육관광부, 2013a)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육지도자들은 각종 체육시설업(상업체육시설), 산업체, 병원, 보건소 등의 운동시설 등 다양한 일터로 진출하고 있다(김완수, 2006; 김용권, 2009; 신윤아, 2005; 정덕조, 2008).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는 아니지만 교육현장에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체육교사와 스포츠강사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직장인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구, 생활)를 두는 한편,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구, 경기)를 두게 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2013b; 2013c).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건강운동관리사와 관계가 있는 곳은 체력단련장업 한 곳뿐이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법상 체육지도자의 일터는 매우 제한되어있고 실속이 없다. 앞으로 체육지도자들이 일하는 곳을 확대 명시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의로 고용을 의무화하던지 최소한 고용을 권장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을 규정할 바에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편이 나을 수 있겠다.

### 체육지도자의 자격구조 및 유형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경기지도자(1, 2급)와 생활체육지도자(1, 2, 3급)가 있었으나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지도사 및 건강운동관리사를 그리고 3가지 자격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

의 자격종류가 너무 세분되고 복잡한 것에 대한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측에서의 주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지도자(혹은 다른 용어로) 하나로 한정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등급 조정이나 전문분야를 구분하면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또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하되 일차적으로 스포츠지도사와 건강운동관리사만을 양성하도록 하고 상위등급에서 혹은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선택사항(추가취득의 형태)으로 세부전공 분야를 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스포츠지도사의 경우에는 선수스포츠지도, 장애인스포츠지도, 청소년스포츠지도 분야를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스포츠분야 및 임상분야(노인포함) 등의 분야를 각각 선택사항 또는 상위등급에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 확충 방안

### 건강운동관리사의 활동영역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들의 일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육지도자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김완수, 2006; 김용권, 2009; 신윤아, 2005; 정덕조, 2008). 특히 최근 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하는 체육지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운동선수의 건강관리나 운동손상재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운동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운동치료나 스포츠 재활을 위한 운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운동사에 대한 공급을 양적으로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옥정석, 안근옥, 2012). 하지만 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대법원, 2009; 보건복지부, 2013a; 2013c) 직업적 안정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 환자들이야말로 가장 전문적인 임상적 운동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전문자격제도가 없어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운동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옥정석, 2009b).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의 일터를 학교, 직장(공공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큰 문제이다(이한규, 2003). 체육지도자의 고용의무를 확대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는 못할지언정 활동영역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김완수, 2006; 정덕조, 옥정석, 2007).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건강운동관리사로 볼 경우에, 건강운동관리사는 종합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장업, 공공기관·산업체·지역사회운동시설,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의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스포츠팀 등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김완수, 2006; 김용권, 2009; 신윤아, 2005).

###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범위

종전에 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대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문화체육관광부, 2013b)에 의하면, “2,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도자의 업무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돼 있지 않고 1,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 구분과 자격취득 대상만 규정돼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혹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다른 법령 등에서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범위가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대상이 환자군 또는 건강주의군에 이르기까지 확대(ACSM, 2009; 2013)될 수 있느냐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본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동처방사라는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자, “2,3급 생활체육지도자”와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

으로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를 운동처방 관련 내용으로 규정했던 것이다(옥정석, 2006). 그로부터 지금까지 “1급 생활체육지도자”가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외 그 밖에 대상자들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2013b)이 이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회, 2013).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은 행복추구권과 관계가 있다. 또한 의사로부터 운동을 권유받는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환자들의 운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는 법적으로 없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2013b; 2013c). 환자들이 운동을 지도 받을 권리(ACSM, 2009; 2013), 나이가 건강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차제에 건강운동관리사에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전문가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건강운동관리사 제도를 이관 받든지 하여, 전문 자격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향을 염두에 두고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범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 걸맞게 적어도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혹은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을 위하여 개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 건강운동관리사의 등급 및 세부전공분야

종전의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그러했듯이 스포츠 지도사와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 등급은 2등급으로 구분될 공산이 크다.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급 건강운동관리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종전의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등급이 문제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앞으로의 체육지도자 등급은 단순히 숫자상의 등급구분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 및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2급은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급의 경우 운동선수(동호인)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분야”와,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분야” 등으로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자격검정 및 연수

건강운동관리사의 활동영역과 업무범위, 자격등급 및 세부전공분야가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자격검정의 방법이나 시험의 내용을 논하기는 이르다. 다만 엄정한 검정 시험은 체육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을 담보하고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체육지도자 수요를 감안하여 유자격자를 배출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전 연수가 없어짐으로써 대학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정덕조, 2006; 2010). 체육지도자의 소용이 커지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시험의 합격률이 체육계열 대학의 교육평가의 일환으로 인식된다면 체육지도자 제도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며 대학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정덕조, 2006; 2010).

개정된 법에서도 여전히 사후 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정 후 연수를 한다고(문화체육관광부, 2013b; 2013d)는 하지만 그 필요성과 성과에 의문이 많다. 제도 시행 초기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초기에 종결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다시 하도록 하고 전문가 교육은 대학교육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문가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자격검정시험이나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옥정석, 2007).

그도 그럴 것이 사법연수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연수를 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경과조치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종전의 경기지도자(1,2급) 및 생활

체육자(2,3급)는 스포츠지도사로 그리고, 종전의 “1급 생활체육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2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경과조치에 대한 문제는 없겠다. 이런 경우 “1급 건강운동관리사”의 전문분야를 세분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운동관리사의 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1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가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첫째,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1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 전문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급 건강운동관리사”의 전문분야를 “스포츠분야” 혹은 “임상분야” 등으로 구분할 경우에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두 분야의 자격을 모두 인정하느냐 혹은 어느 한 부분의 자격을 인정하느냐(그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더욱이 “1급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범위가 환자(운동손상자 포함)를 포함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후속 처리가 요구된다.

둘째,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1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할 경우에 경기지도자(1,2급) 또는 “2, 3급 생활체육지도자”들이 “2급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2013b)에서 “2,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중 “2급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의 경우는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연수 및 검정 대상자이기 때문에 “2급 건강운동사” 자격안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기지도자의 업무범위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음으로써 “1급 경기지도자”는 “1급 건강운동관리사(스포츠분야)”로 봐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2급 경기지도자” 또한 “2급 건강운동관리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 문제가 복잡해 질

소지가 높다. 이들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체육지도자 자격과 관계없이 앞으로 건강운동사들이 일해야 하는 직장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무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급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에 대한 구체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1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할 경우에 “2급 건강운동관리사”는 처음 생기는 제도이다. “과거 1급 생활지도자”가 되려면 대학원(석사, 박사)을 졸업하거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소지자 이어야 했다. 학부 졸업자들은 응모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부졸업자들이, “건강운동관리사”들의 일터라고 간주될 수 있는 곳에 이미 취직되어 일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가상할 때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차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어디서 일하는 전문가자격사인지 분명히 하고 그러한 곳에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근무하고 있는 운동전문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경과조치에 상응한 구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옥정석, 2006).

## 결론 및 제언

자격제도의 성패는 자격증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진정한 통로가 되느냐에 달렸다. 체육지도자는 체육 전공자들을 위한 취업의 통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자격소지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명확치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면 크게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점을 중시하여 체육지도자들의 일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 제도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요, 보건 의료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여전히 건강운동관리사가 보건 의료 분야의 운동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이관 할 각오로 사안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보험 재정개선 등 선순환의 보건복지 행정을 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가능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는 진정한 사유가 있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운동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정립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학과 명칭의 개선과 교육과정의 정립, 실험실습 교육의 강화 등 대학 특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광욱 (2006). 의료비 절감과 생활체육. 대한운동사협회, **제7회 운동사대회**. pp. 252-256.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국회 (2013).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김경원 (2007). 사회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체육정책의 대한 소고. **스포츠건강의학학술지**, 9(1): 133-146.

김기진 (2009). 체력증진에 따른 유병률 감소효과.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2차(국회) 대토론회**. pp. 15-27. 서울: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김완수 (2006).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전문인력 양성방향. 한국체육학회, **미래 지향적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pp. 43-50. 서울: 한국체육학회.

김용권 (2009). 운동사의 수요 현황과 전망.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2차(국회) 대토론회**. pp: 33-41. 서울: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대법원 (2009). **제2부 판결: 의료법 위반**. 사건번호 2009 도07455.

문화체육관광부 (2013a). **국민체육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센터. <http://www.law.go.kr>

문화체육관광부 (2013b).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문화체육관광부 (2013c).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문화체육관광부(2013d).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5889)**.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박일혁 (2009). 체육활동참여의 의료비 절감효과.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2차(국회) 대토론회**. pp. 29-31. 서울: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보건복지부 (2013a).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2013b).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2013c). **의료법**. <http://www.law.go.kr>.

신윤아 (2005). 운동사의 수요와 전망. 대한운동사협회, **제6회 운동사대회**. pp. 17-22.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옥정석 (2006). 현행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체육학회, **미래 지향적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pp. 51-105. 서울: 한국체육학회.

옥정석 (2007).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개혁. **스포츠 건강 의학학술지**, 9(2): 79-96

옥정석 (2009a).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운동사면허.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pp. 15-102. 서울: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옥정석 (2009b).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운동사 면허제도 설치를 위한 2차(국회) 대토론회**. pp. 45-54. 서울: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옥정석, 안근옥 (2012). 운동사에 관한 규칙 제정 검토(안). **운동학학술지**, 14(1): 77-88.

옥정석, 안근옥, 홍지영 (2010). “운동사 양성 법제화”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학 학술지**, 12(4): 95-104.

이운태 (2010). 건강관리서비스 성공적 실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 pp.

- 21-35.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한규 (2003). 운동처방분야 지도자양성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대한운동사협회, **제4회 운동사대회, 2003 국제학술심포지엄**. pp. 27-36.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 전병률 (2006). 체육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역할에 관한 토론. 한국체육학회, **미래지향적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 pp. 27-36. 서울: 한국체육학회.
- 정덕조 (2006). 특성화 대학의 교육과정 및 세부시설프로그램. 대한운동사협회, **제7회 운동사대회**. pp. 28-37.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 정덕조 (2008). 국민건강증진 도우미로서 운동사의 위상과 역할. 대한운동사협회, **제9회 운동사대회**. pp. 21-27.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 정덕조 (2010). 유능한 운동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정 개선 방향. 대한운동사협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비 운동사 교육과정 개선 세미나**. pp. 27-41.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 정덕조, 옥정석 (2007). 한국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현황과 전망. 대한운동사협회, **제8회 운동사대회**. pp. 19-24.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 제세영 (2010). 운동이 질병예방에 미치는 효과 및 임상운동 관리 지침. 대한운동사협회/국회문화체육관광 광포럼/보건복지부, **"운동사 자격인정" 대토론회**. pp. 43-52. 대한운동사협회/국회문화체육관광 광포럼.
- 최중명 (2010).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과 전망. 대한운동사협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비 운동사 교육과정 개선 세미나**. pp. 3-40. 서울: 대한운동사협회.
- ACSM (2009). Principles of Health Behavior Change. InACSM(Ed.), *ACSM's Resource Manual for Guideline for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6th)*, pp. 710-723.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ACSM(2013). [http://www.acsm.org//AM/Template.cfm?Section=Home\\_Page](http://www.acsm.org//AM/Template.cfm?Section=Home_Page)
- Blair, S. N., Kohl III, H. W., Barlow, C. E., Paffenbarger, R. S., Gibbons, I. W., & Marcera, C. A. (1995). Changes in physical fitness and all-cause mortality: A perspective study of healthy and unhealthy men. *JAMA*, 273: 1193-1198.
- Blair, S. N., Kohl III, H. W., Paffenbarger, R. S., Clark, D. G., Cooper, K. H., & Gibbons, I. W. (1989). Physical fitness and all-cause mortality: A perspective study of healthy men and women. *JAMA*, 262: 2395-2401.
- Prochaska, J. O., & Velicer, W. F. (1997).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health behavior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2:38-48.

## ABSTRACT

# Policy Alternatives for Expanding Professional Domain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Oak, Jung-Sok

*Dankook University*

*KINESIOLOGY, 2013, 15(2): 139-146. Policy Alternatives for Expanding Professional Domain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INTRODUCTION]** After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amended, enforcement ordinances on sports/exercise professionals will be effective from 1st, January 2015. This research report will discuss points of criticism of the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enforcement ordinances to expand professional domain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BODY]** To increase employment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state more workplaces for them and also there should be clauses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enact mandatory employment or at least, encourage employment. The structure of qualification system for sports/exercise professionals is too complex and excessively subdivided. It is possible to train various professionals by subdividing area of expertise and levels even if qualification title is unified.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can work at athletic complex, fitness training center, public institutions, related industry, community wellness center,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 oriental medical clinic, health centers, sports organizations and sports teams, etc.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is people who plan and instruct the most appropriate exercise activities for individuals considering one's phys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ir field of activity should be extended to health and medical area. I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is categorized in 2 classes, it is possible to classify 1st class as sports specialist, clinical specialist, etc. Even though role of university will be extended since occupational training after qualification will be implemented, the government should only perform as qualifying body by abolishing occupational training and respect the role of university. In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interim measures, former 'first-class life sports leader' should be regarded as 'second-class life sports leader' to achieve expertise and prevent confusion. Also there should be counterplans for people who already have been working in related field. **[CONCLUSION]** The qualification system should operate as means of employment for majors. For a virtuous cycle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and financial improvemen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admit role of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or have forward-looking perspective and foster specialists in sports/exercise by itself. For employment of students, there should be one voice from university for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qualification system of sports/exercise professional.

Key words :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ports/exercise professional,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Professional domain

논문투고일 : 2013. 3. 00

1차 수정일 : 2013. 4. 00

게재확정일 : 2013. 4. 00